

대한화학손상연구회 회칙

제 정 -----

개 정 2021. 11. 24.

전문개정 2023. 6. 29.

2025. 3. 7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회는 대한화학손상연구회(이하 연구회)라 칭하며, 영어 명칭은 Korean Research Society of Chemical Injury (KRSCI)으로 한다.

제2조 (소재지) 본 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 회의 목적은 화학물질로 인한 개인 치료의 의학적 관점과, 집단 노출의 예방, 치료의 관점에서 손상 기전 연구, 치료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화상손상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제작 및 보급하여 개인 및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.

제4조 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- ① 화학손상에 대한 대비, 대응, 치료에 대한 학술 연구사업
- ② 화학손상 치료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홍보 사업
- ③ 화학손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 및 훈련 관련 사업
- ④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
- ⑤ 그 외 조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5조 (산하단체) 본회는 대한응급의학회의 산하단체로 운영한다.

제2장 회원

제6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,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.

① 정회원

1.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보건의료종사자 또는 재난 관계자
2.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

② 준회원

1. 본 회의 이사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

③ 명예회원

1.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
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- ① 본 회의 학술연구사업 및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.
-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③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온라인을 포함한 행사, 교육 및 발행되는 간행물 등의 수혜자가 된다.
- ④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제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⑤ 정회원은 자격에 따른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- ⑥ 본 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이나 주제, 교육 콘텐츠 등 제반 내용을 본 회의 허락없이 도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.

제3장 임원

제8조 (임원의 구성)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회장 1명
 - ② 부회장 1명
 - ③ 이사장 1명
 - ④ 이사 13명
- 총무이사
 - 학술이사

- 정책이사
- 홍보이사
- 법제이사
- 재무이사
- 연구이사
- 교육이사
- 정보이사
- 섭외이사
- 국제협력이사
- 대외협력이사
- 지역사회이사

⑤ 감사 2명

⑥ 고문 10명 이내

⑦ 분과위원장 3명(교육개발위원장, 실습교육위원장, 연구통계위원장)

제9조 (임원의 선출)

- ① 회장, 부회장,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.
- ② 회장, 부회장, 이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 법제이사는 '선거관리위원회'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되고, 총무이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.
- ③ 이사장은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이사와 분과위원장을 임명한다.
-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추인한다.
- ⑤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
제10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중임할 수 있다
-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관한다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장은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
-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1. 연구회의 재정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정부부처 장에게 보고하는 일
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5. 연구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 6.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
제12조 (임원의 해임) 회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 임원 해임의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 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하고,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추진한다.

- ① 연구회의 정관 또는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때
-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- ③ 직무태만,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- ④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제13조 (임원의 대우)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총회

제14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재적 정회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
-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③ 임원의 선출,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④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중요사항
- ⑥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15조 (총회소집 및 의결)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연 1회 이상 개최한다.

- ② 임시총회는 본 회의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.
- ④ 본 회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
-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 (총회소집의 특례)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③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제 5장 이사회

제17조 (이사회의 구성과 기능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, 실천,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자격 박탈에 관한 의결
 - 3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

- 4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5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6. 회칙 제/개정에 관한 사항
- 7.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8. 기타 의결을 요하는 회무사항

제18조 (이사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④ 이사장과 이사가 아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,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9조 (이사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)

- ①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의결에 대한 의사를 위임하거나 서면 결의할 수 없으며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권한을 갖는다.

제20조 (이사회 회의록 작성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고한다

제6장 재정

제21조 (회계 관리)

- ①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입회비 및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- ② 본 회의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- ③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④ 본 회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 년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.

⑤ 본 회의 워크샵 운영비, 교통비 및 강사비에 대한 결정은 총회나 운영자 회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
이 정관은 총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